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7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전은수 · 오세희 · 김정호
이정문 · 손명수 · 김영배
한준호 · 문진석 · 정태호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임시조치·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중전의 제5항 및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소송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처분 또는 명령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 ③ 법원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아니

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한정한다)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다만, 소송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처분 또는 명령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
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

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40조제1항
에 따른 보호처분,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른 잠정조치, 제17조의6제1항
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
보호명령

③ 법원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
기 전까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⑥ -----
-----제6항-----

시향고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⑦ 제6항----- -----.
--	---